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 ·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58

제출일자 : 2021. 12. 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여기간 변경(제7조제1항 별표)

- 현행) 기본 6개월, 최대 2년 연장 가능
  개정) 기본 6개월, **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까지 연장가능**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9조, 제22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본예산(안) 1천만 원 반영

다. 기타사항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1. 10. 15. ~ 11. 4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　　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(제7조 관련)

구 분	내 용	비 고
이용료/1대당	6,000원	기본 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납부 (1개월 기준 이용료 : 1,000원)
대여기간	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36개월까지 연장가능	※ 대여 시 6개월,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 ※ 단,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일 경우, 잔여 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
미반납 시 연체료/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 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

○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입 시기	배상금액
유모차 분실	1년 이하	구입가격의 90%
	1년 초과 2년 이하	구입가격의 70%
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
구성품 분실	불문	아래 유모차 파손 · 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

○ 유모차 파손 · 훼손 시 배상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배상금액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	없음
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	소요비용의 50%
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	500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
<td>

<u>제7조(육아용품의 이용료 등)</u>

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료,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[별표]를 따른다.

[별표]

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(제7조 관련)

구 분	내 용	비 고
이용료/ 1대당	6,000원	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
대여기간	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	삭제
미반납 시 연체료/ 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

○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 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구입 시기	배상금액
유모차 분실	1년 이하	구입가격의 90%
	1년 초과 2년 이하	구입가격의 70%
	2년 초과	구입가격의 50%
구성품 분실	불문	아래 유모차 파손 · 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

</td>
<td>

<u>제7조(육아용품의 이용료 등)</u>

① <현행과 같음>

[별표]

○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(제7조 관련)

구 분	내 용	비 고
이용료/ 1대당	6,000원	기본 6개월 기준, 연장 시 추가 납부 (1개월 기준 이용료 : 1,000원)
대여기간	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	※ 대여 시 6개월,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 ※ 단,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일 경우,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
미반납 시 연체료/ 1일당	400원	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(완납 시 가능)

○ <현행과 같음>
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○ 유모차 파손 · 훼손 시 배상 기준
(제7조제2항 관련)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배상금액</th></tr><tr><td>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</td><td>없음</td></tr><tr><td>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,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</td><td>소요비용의 50%</td></tr><tr><td>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</td><td>500원</td></tr></table></td>
<td>○ <현행과 같음></td>
</tr>
</table>

참고	상위 및 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